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08일 01시 31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문화예술과	3
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	3

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

작성일 2023.04.12 조회수 365 수정일 2023.04.12 00:00
10:04

✓ 민원사무명	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
✓ 민원내용	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
✓ 관계법령	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→ 민원인 제출 서류 1.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 1부. 2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차한 경우에 한함) 1부. 3.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·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.
✓ 구비서류	→ 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 1.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인 경우에 한함) 2. 건물등기부등본(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) 3. 전기안전점검확인서
✓ 처리부서	문화예술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민원지적과
✓ 수수료	조례
✓ 처리기간	7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① 민원인신청 → ② 종합민원실 서류접수 → ③ 문화예술과로 민원서류 이송 → ④ 등록사항 서류 검토 → ⑤ 현지확인 → ⑥ 기안·결재 → ⑦ 등록증 작성 → ⑧ 민원인 교부
✓ 기타참고사항	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 [별지 제22호서식]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hwp (1358 hit/ 19.0 KB) ↓

미리보기

이전글
비디오물 제작(배급)업 변경신고

다음글
비디오물배급업 신고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